

[] 예방접종 [] 격리 [] 이동제한
[] 출입제한 [] 살처분

명령서

제 호

기관 또는 단체	기관명 또는 단체명				
	소재지				
대표자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			전화번호	
명령의 내용	대상 지역				
	대상 질병			조치기간	
대상 야생 동물	종류				
	수량				
준수사항				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예방접종 [] 격리 [] 이동제한 [] 출입제한 [] 살처분할 것을 명합니다.

년 월 일

환경부장관
시·도지사



유의사항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·격리·이동제한·출입제한·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